

의안번호	2213730
의 퇴 인	박균택의원
회 답 일	2025.12.17.
추 계 번호	25D5705

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57억 6,600만원씩 5년간 총 288억 3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연 평균 영장실질심사 건수(건, A)	24,029	24,029	24,029	24,029	24,029	—	—
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 전체 인원수(명, B)	128	128	128	128	128	—	—
판사 1인당 연평균 영장실질심사 개최 횟수 (회, C=A/B)	187.7	187.7	187.7	187.7	187.7	—	—
영장실질심사 참여 위원 수(명, D)	2	2	2	2	2	—	—
위원 수당 (백만원, E)	0.12	0.12	0.12	0.12	0.12	—	—
추가재정소요 (백만원, F=B×C×D×E)	5,766	5,766	5,766	5,766	5,766	28,830	5,7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구속 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)	각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속영장심사위원(이하 “구속심사위원”이라 함)을 위촉(제1항) － 대학교육협의회 － 노사민정협의회 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속심사위원의 인원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속영장 전담 법관 수의 3배 이상으로 함(제3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조(구속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)	0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법관의 구속영장 심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구속영장심사위원(이하 “구속심사위원”이라 함)의 수당에 한정하여 추계함
-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¹⁾에 따르면, 구속심사위원은 지방법원 및 지원의 소재지 내의 대학교육협의회, 노사민정협의회,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아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속영장 전담 법관 수의 3배 이상으로 위촉되며, 영장실질심사 1회당 참여하는 위원 수는 2명임
- 대법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속영장 전담 판사의 수는 128명이고,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 평균 영장실질심사 건수는 24,029건임

1) 「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」 (의안번호: 2213730)

제4조(구속심사위원의 위촉 및 구성) ① 각 지방법원장 및 지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구속심사위원을 위촉한다. 다만,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없는 경우, 인근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는다.

1. 「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」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협의회
2.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노사민정협의회
3. 「대한민국헌법」 제92조에 근거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

③ 구속심사위원의 인원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의 구속영장 전담 법관 수의 3배 이상으로 한다.

[표 2] 연간 영장실질심사 건수: 2020~2024년

(단위: 건)

구분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
건수	24,860	21,051	21,729	25,435	27,071	24,029

자료: 대법원

- 구속심사위원 수당 단가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일당을 참고하여 12만원으로, 영장실질심사 건별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-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연 평균 영장실질심사 건수는 24,029건으로, 판사 1인당 연평균 187.7건 담당
- 전체 판사의 수는 128명이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구속심사위원 수는 2명이며, 위원 1인당 수당은 12만원이므로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

[표 3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명, 회,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연 평균 영장실질심사 건수(건, A)	24,029	24,029	24,029	24,029	24,029	—	—
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 전체 인원수(명, B)	128	128	128	128	128	—	—
판사 1인당 연평균 영장실질심사 개최 횟수 (회, C=A/B)	187.7	187.7	187.7	187.7	187.7	—	—
영장실질심사 참여 위원 수(명, D)	2	2	2	2	2	—	—
위원 수당 (백만원, E)	0.12	0.12	0.12	0.12	0.12	—	—
추가재정소요 (백만원, F=B×C×D×E)	5,766	5,766	5,766	5,766	5,766	28,830	5,7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영장실질심사가 1년에 걸쳐 균일한 빈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임지원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